##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00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서영교·이해식·김용만

박홍배 • 한민수 • 복기왕

강준현 · 임오경 · 조인철

채현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유형 분류, 매뉴얼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조의2(화재유형별 대응 매뉴
	얼 작성 등) ① 소방청장은 화
	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
	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유형 분
	류, 매뉴얼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